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사
22	5	1980. 2. 21	총재 신 병 현

의 안 "한국은행 여신업무이월" 일부개정

의결사항 1. "한국은행 여신업무이월"을 별안과 같이
일부 개정한다.

2. 실시일자 : 1980. 2. 21.

3. 경과조치

가. 1980. 1. 1. 이전에 이미 취득한 농업,

수산업, 회원사업어음, 및 기타어음중

지방산업차입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금

에 대하여는 등 담보어음에 관련된

금융기관대출의 당초 약정기한까지

-/-

년 8.0 % 및 연 15.0 % 를 각각
적용한다.

나. 1980 / 12 이후 취득한 농업, 수산업
회원사업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
대하여는 1980 / 30까지 연 1.0 %를
적용한다.

제외관계
법구조항

한국은행법 제 12 조

제외 제외

지난 / 12 금리인상시 당행 기좌어음담보
대출중 특별이율적용대상 대출금리의 소폭인상
에 따른 여타 여신이율과의 불균형
을 시정하는 동시에

1095

금융기관 여수신이율의 전반적인 인상에도

불구하고 농. 수협외 영농 및 영어자금에
대하여는 중점금리와 계속 적용됨에 따라
등 자금취급에 따른 농. 수협의 수지부담을
경감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
제외함

참고사항

1. 제외관계 법구조항

한국은행법 제 12 조

(1)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69조에

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
정한다.

(2)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69조에 규정

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타
조건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
2. 첨부물

가. 전행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

나.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 변경추이

다. 한국은행 대출금추이

1097

“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” 일부개정(안)

구 분	이 율	
	현 행	개 정 (안)
당 보 대 출 금 업 무 이 율 (농협및 수협 회계부분)	연 14.0 %	연 10.0 %
기타어음	연 27.0%. 다만, 금융통화위원회 회가 따로 정하 는 용자대상은 연 18.0 %.	연 27.0%. 다만, 금융통화위원회 회가 따로 정하 는 용자대상은 연 21.0 %

1098